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100026-01



상표법, 부정법상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조치의무 등 연구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상표법, 부정법상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조치의무 등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 구 기 간 : 2024. 9. 6.~ 2024. 12. 5.
- 주관연구책임자 : 조 영 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제2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범위	2
I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의 비교	2
1. 최광의(最廣義) 유형: 대상 행위와 주체적 범위가 모두 넓은 유형(DSA)	2
2. 광의(廣義) 유형(1)	5
3. 광의(廣義) 유형(2) :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8
4. 협의(狹義) 유형	9
가. 외국의 예	9
(1) 미국의 SHOP SAFE 법안(2024)	9
(2) 미국의 Inform Consumer Act(2024)	9
(3) 중국의 전자상무법(電子商務法: 2019)	10
나. 우리나라의 예	10
(1) 전자상거래법 [2024. 2. 13. 일부개정, 2025. 2. 14. 시행]	10
(2)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들의 현황	11
II . 바람직한 입법모델	21
(1) 최광의, 광의(I · II) 모델은 지양함이 상당함	21
(2) 협의(狹義) 모델에 기반하여 정의 규정을 설계	22
(3) 정의개념 추가 개정 모델	24
제3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강화와 위반에 대한 제재	25
I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강화	25
1. DSA의 관련 규정들 / 독일의 DSA 집행법(2024)	25
2. 중국 전자상무법(電子商務法: 2019년 시행)	33
II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 정리	34

1. 해외 규정들	34
2. 우리나라	36
가. 전자상거래법	36
나. 상표법 개정안	37
제4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규모 구별	39
1. 외국의 예	39
가. DSA	39
나. 미국 Inform Consumer Act	40
2. 우리나라의 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	40
가. 법안 일괄	40
나. 규모의 유형별 정리	50
3. 입법 제안	52
가. 일반론	52
나. 해외 소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특수성과 그 대책	52
제5절. 국내대리인 제도	54
I. 주요 외국의 예	54
1. EU 일반정보보호규범(GDPR, EU 2016/679)	54
가. 일 반	54
나. 대리인의 주된 의무	54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55
2. NIS2 Directive (범 유럽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지침)	56
가. 일 반	56
나. 국내대리인 규정 [전문 제116조, 본문 제26조(3), (4)]	56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56
3. EU AI법	56
가. 일반	56
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57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58
4. 미국 SHOP SAFE 법안(2024)	58
가. 일 반	58
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58
다. 해 설	59
5.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60
가. 일 반	60
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60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60
6. DSA(Digital Service Act)	61
가. 일 반	61
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61
(1) 전문 제44 단락	61
(2) 제13조	61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62
7. DSA의 독일 내 이행을 위한 법(2024. 5. 16. 시행)	62
8. 일본 電気通信事業法(2020)	62
가. 일 반	62
나. 국내대리인	63
(1) 관련 규정	63
(2) 국내대리인의 위상	64
(3) 적용범위	64
(4) 국내대리인의 책임	64
9. 정 리	64
II. 국내의 상황	67
1. 입법례들	67
가.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67
(1) 규정의 내용	67
(2) 대상이 되는 사업자(규모): 시행령 제19조	67

(3)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제재(법 제76조 제2항 4의2호)	68
(4) 국내대리인의 의무	68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	68
(1) 규정의 내용	68
(2)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 시행령 제32조의3	69
(3)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제재 : 법 제75조 제3항 제2호	69
(4) 국내대리인의 의무	69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69
(1) 규정의 내용	70
(2)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	70
(3) 국내대리인 미지정 혹은 부적정 지정에 대한 제재	70
(4) 국내대리인의 의무	71
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2024. 8. 20.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71
(1) 규정의 내용	71
(2)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법안 제20조의4 제1항)	72
(3) 국내대리인 미지정시 제재(법안 제45조 제3항 제1의2목)	72
(4) 국내대리인의 의무(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72
마. 상표법 개정안 (2024. 11. 19. 제출, 의안번호 제2205684 이철규 등)	73
(1) 규정의 내용	73
(2)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	74
(3)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제재 (법안 제237조 제1항 제3호)	74
(4) 국내대리인의 의무	74
2. 요 약	74
Ⅲ. 향후 법 개정의 착안점	75
1.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75
가.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문제점	75
나. 국내대리인의 실효적 접촉가능성 제고 필요	76
2. 국내대리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모호성	76

제6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81
I . 외국의 예	81
1. DSA (제10조)	81
2. 독일(Digitale-Dienste-Gesetz:제33조 제6항 제2호, 제5항 제1호)	82
3. 중국 전자상무법(2019)	82
4. 미 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비자를 위한 정보공개법	83
가. 법 적용 대상자	83
(1) 온라인 마켓플레이스[(f)(4)]	83
(2) 대량 판매자[(f)(3)]	84
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대량판매자에 대한 정보 관련 의무[(a)]	84
(1) 정보의 수집[(a)(1)(A)]	84
(2) 정보의 업데이트와 인증[[a)(1)(B), (C)]	84
(3) 정보의 검증[(a)(2)(A), (B)]	84
(4) 정보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제한[(a)(3)]	84
(5) 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a)(4)]	85
(6) 정보의 공개[(b)]	85
(7) 공개의 예외[(b)(2)(A)]	85
(8) 공개 예외에 대한 제한[(b)(2)(B)]	86
(9) 신고 수단[(b)(3)]	86
(10) 정보공개의 강제	86
다. 위반의 효과	86
5. 일본(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의 발신자 정보개시청구)	86
가. 권리주장자의 개시청구(제5조)	86
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제6조)	87
다. 발신자 정보 공개 명령(제8조)	87
II . 국내의 입법례 (전자상거래법)	87
III. 정리와 시사점	92

1. 판매자 신원정보에 대한 요청 가능성	92
2. 접근대상이 되는 정보	93
가. 신상정보로 한정	94
나. 규정의 방식	94
Ⅳ. 입법모델의 제안	94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연구는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조치의무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쟁점들에 대한 국내외의 제도와 논의를 정리하고 그를 기반으로 적합한 법 개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선행 연구(“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시장에서의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부과를 위한 입법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그 이후 국회에 제출된 상표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5684호)의 온라인 플랫폼 책임 규정들과 관련하여 다음 주제들을 심화 연구한다. 즉, ① 상표법 상 간접침해 책임을 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범위, ②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강화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③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규모에 따른 책임 부과 차별화 기준, ④ 해외에 소재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제도, ⑤ 서비스 이용자(판매자)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가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주제들에 대한 국내외의 제도와 실무례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 입법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상표법의 개정으로 이어지는 경우 적절한 규정안을 제안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그 세부 내용에 대한 대통령령의 모델도 제시하게 된다.

제2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범위

1.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의 비교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둘러싸고는 비교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존재한다.

1. 최광의(最廣義) 유형: 대상 행위와 주체적 범위가 모두 넓은 유형 (DSA)

① 대상 행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적재산권 침해는 물론, 명예훼손, 가짜뉴스, 테러 모의, 인종·종교차별, 혐오범죄, 아동포르노 등 다양한 범죄행위들에 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침해 책임을 규율한다.

② 주체적 범위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에 관여하는 폭넓은 주체들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며, 전자상거래의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넓게는 인터넷 망서비스 제공자, 정보의 검색이나 저장서비스 제공자까지 모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포섭하여 책임주체로 인정한다.

DSA는 상위개념으로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중개자(intermediary)’라고 호칭하며, 그 구체적 하위개념 서비스를 ‘단순전달’, ‘캐싱’, ‘호스팅’,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분류하여 각각 의무와 면책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중개서비스	서비스 내용	면책의 여지
서비스의 종류 (제	단순전달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제공한 정보를 통신망에서 전송하거나 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것 (인터넷 망, VPN, VoIP 등)	제4조 제1항 - 넓은 수동적, 기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데 그치면 대체로 면책
	캐싱	정보를 통신네트워크에서 전송하는 과정에서 향후의 전송을 보다 효율	제5조 - 중간 ① 효율적·안정적 정보제

3 조)		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적으로 저장 (정보전달 네트워크나 프록시 서비 스)	공을 유일한 목적으로 자동 으로 수정 없이 저장 ② 최 초전송된 정보가 삭제·차 단된 것을 알게 된 즉시 캐 싱된 정보를 삭제·차단 시
	호스팅	서비스의 이용자의 제공과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저장 (웹호스팅 서비스,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등)	제6조 - 줌
	온라인 플랫폼	호스팅 서비스 중 저장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는 서비 스까지 제공 (온라인 마켓, 소셜미 디어 네트워크, 앱스토어 등)	i) (a) 불법행위 또는 불법 콘텐츠임을 알지 못 하고, 불법행위 또 는 불법 콘텐츠가 명백하리라는 사실 이나 상황이 없을 것 또는,
	초 대 형 온 라 인 플 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 소정 기준 이상 규모의 플랫폼	(b) 불법행위나 불법 콘텐츠임을 알게 된 후 해당 콘텐츠 를 신속하게 제거 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 ii) 제 i)은 서비스를 받는 자가 제공자의 권한이 나 통제 하에 행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iii) 제 i)은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서비스를 받 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아, 해당 거래가 ISSP가 직접 당사자이 거나 적어도 그의 보증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검색엔진 · 초대형 검색엔진	온라인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검색된 콘텐츠와 정보를 반환하는 중개서비스 (Google, Bing, Yahoo 등)	검색엔진의 작동 국면에 따라 단순전달, 캐싱, 호스팅의 면책 사유를 개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음 (DSA 전문 (28))			
	내 용		중개서비스			
단순전달 · 캐싱			호스팅	온라인 플랫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 초대형 검색엔진	
주요 공통 의무	정보제공(제10조)		○	○	○	○
	연락창구확보(제11조, 제12조)		○	○	○	○
	법률대리인 지정(제13조)		○	○	○	○
	투명성보고서 공개(제15조)		○	○	○	○
주요 추가 의무	신고 및 조치제도(제16조)			○	○	○
	범죄혐의 신고(제18조)			○	○	○
	당사자 이의 제도(제20조)				○	○
	소송 외 분쟁해결(제21조)				○	○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에 의한 신고제도(제22조)				○	○
	반복 위반자에 대한 조치(제23조)				○	○
	투명성보고의 추가의무(제24조)				○	○
	다크패턴 금지(제25조)				○	○
	광고의 방법(제26조)				○	○
	추천시스템의 투명성(제27조)				○	○
	미성년자보호(제28조)				○	○

판매자 추적가능성(제30조)			○	○
위험평가 및 위험경감, 위기대응체계(제34~36조)				○
독립적 감사(제37조)				○
추천시스템 중 프로파일링 이외의 옵션 선택(제38조)				○
데이터 공유(제40조)				○
준법감시(제41조)				○

2. 광의(廣義) 유형 (1) - 미국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DMCA) / 우리나라 저작권법

이는 규율의 ① 대상행위는 좁고, ② 주체적 범위는 넓은 유형에 속한다.

DMCA(1998)는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의 침해를 가능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주체들에 대한 간접침해 책임과 그 면책을 규정한 선도적 입법으로서, 제512조를 통해 i) 「Notice & Take down」 면책구조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ii) 간접침해 주체들을 그 역할모델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는 한편, iii) 각각에 따라 면책의 사유와 범위를 달리 정한 바 있다. DMCA의 주요 규정내용들은 이후 한미 FTA를 거쳐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면책 규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2011).¹⁾

① 대상 행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 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주체적 범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관여하는 폭넓은 주체들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 접속서비스, Cache 서비스, 저장서비스 및 정보검색서비스의 제공자들이 주체적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 내용을 표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승남, “파일 호스팅 서비스의 DMCA 제512(c)와 저작권법 102조 면책항들에 관한 한미 법원 판례의 검토”,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2016), 706~709면.

주체	해당조문	서비스 내용	면책사유(모두 갖출 것 필요)
인 터 넷 접 속 서 비스 제 공자	제102조 제 1 항 제 1 호	네트워크 사이의 통신 이 가능하도록 서버까 지 경로를 설정·연결 “내용의 수정 없이 저 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 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 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 간 내에서 자동적·중 개적·일시적으로 저장 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 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 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관리자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 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이용 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Caching 서 비 스 제공자	제2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중앙서버와 별도의 서버에 임시저 장, 이용자의 활용속도 를 높여주는 서비스 “서비스이용자의 요 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 물등을 후속 이용자들 이 효율적으로 접근하 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중개적·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 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 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관리자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 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이용 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 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공되는 저작물 등에 접근하기 위 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 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가 명 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 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아.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저 장 서 비스 제 공자	제3호	[저장] 카페, 블로그, 게시판, 웹하드 등 이용자의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 주는 서비스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정보검색] 각종 정보검색 도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관리자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연결해 주는 서비스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 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사. 제103조 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	--	---	---

3. 광의(廣義) 유형(2) :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이는 규율의 ① 대상행위는 넓고, ② 주체적 범위는 좁은 유형에 속한다.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은 「특정전기통신 역무 제공자(프로바이더)」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i) 권리침해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과, ii) 분쟁 시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 주장자에게 피의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① 대상행위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대상이 된다. 법 제1조에서 말하는 「권리의 침해」란, 개인법익의 침해로서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 전반을 아우르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것이 상정된다. 아울러, 형법상의 외설에 해당하는 정보, 아동 포르노 등 사회적 법익 외에 개인적 법익의 침해도 수반되는 경우라면 이 법의 적용이 있다. 다만, 단지 사회적으로 유해한 정보일 뿐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는 이르지 않는 정보의 유통에 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이 없다고 한다.²⁾

② 주체적 범위 동법이 규율하는 「특정 전기통신설비」란, 특정 전기통신을 행하는 자에 의해 사용되는 전기통신설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축적형」의 특정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웹서버” 나, 「비 축적형」 특정전기통신에 이용되는 “스트리밍 서버” 등이 여기 해당한다고 설명된다.³⁾ 따라서 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주체적 범위는 주로 웹서버나 스트리밍 서버의 운영자로 한정된다.

2) 일본 특허청,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축조해설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83501.pdf, 4면.

3) 위 해설, 7면.

4. 협의(狹義) 유형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주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에 한정하는 입법모델이다. 즉, ① 대상행위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상품거래 등으로 한정되고, ② 주체적 범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된다.

가. 외국의 예

(1) 미국의 SHOP SAFE 법안(2024)

① 대상행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제3자가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청약을 하거나,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체적 범위 동 법안은 규율 대상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등은 두고 있지 않으나, 제2조의 제목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 FOR ELECTRONIC COMMERCE PLATFORMS)” 이고, 본문 제4조(A) 역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B)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 기여책임을 진다고 한다.⁴⁾

(2) 미국의 Inform Consumer Act(2024)

① 대상행위[(f)(5)]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 제품의 판매관련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sells, offers to sell, or contracts to sell a consumer product...”),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제품이란, “상거래에서 유통되고 일반적으로 개인, 가족 또는 가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의 개인 재산(부동산에 부착되거나 설치되도록 의도된 재산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f)(2); 15 USC 2301].

② 주체적 범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f)(4)] 소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i) 판매자가 미국에서 제품의 판매, 결제, 보관, 배송을 허용하거나 촉진하거나 활성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ii) 하나 이상의 판매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고, iii)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 등을 맺게 하는 주체를 말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B), an electronic commerce platform shall be contributorily liable in a civil action under paragraph (1) for a case in which a third-party seller is shown to have used in commerce a counterfeit mark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a good that implicates health and safety on the platform”

(3) 중국의 전자상무법(電子商務法: 2019)

① 대상행위(제2조) 전자상거래 활동에 적용되며,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등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행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아울러 동법은, 금융상품과 서비스,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뉴스 정보, 음성·영상 프로그램, 출판 및 문화 상품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② 주체적 범위(제9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전자 상거래에서 거래 쌍방 또는 복수의 당사자에게 네트워크상의 거래 장소 제공, 거래의 중개, 정보 배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나. 우리나라의 예

(1) 전자상거래법 [2024. 2. 13. 일부개정, 2025. 2. 14. 시행]

전자상거래법은 아래와 같이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해 상품(서비스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그에 기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상공간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신판매 중개”라는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다. 결국 ① 규율의 대상행위는 상품(서비스 포함)의 거래, ② 주체적 대상은 인터넷 가상공간의 이용허락이나 기타 하위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판매 등 거래가 가능하도록 알선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제2조: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물(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들의 현황

2024. 1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은 대체로 그 적용대상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등을 전제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의 정의규정은 이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은 물론, 상표법 개정 시에도 규율의 정합성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가) 법안 현황

연 번	법안명 [발의일자]	주요 내용	정의 규정
1	[1101]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등)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규제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 또는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하 “거래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u>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나. 재화등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2	[110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등)	<u>온라인 플랫폼 사업자</u> - 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 또는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u>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나. 재화등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3	[10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등)	<u>온라인 플랫폼 사업자</u> - 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둘 이상 집단의 이용자들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약 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1021] 온	<u>시장 지배적</u>	제2조(정의)

	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규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정보의 수집, 저장, 검색, 송신, 수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 등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이용자나 이용자 집단 간 <u>거래 및 정보교환 등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적 시스템</u>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 제공 나. 재화등의 거래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등의 거래를 연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3. “온라인 플랫폼 중개부가서비스”(이하 “중개부가서비스”라 한다)란 중개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대행, 배송 지원, 고객관리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5	[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u>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을 말한다. 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6	[100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등)	<u>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u> 의 규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u>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u>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 또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이용자 간의 재화·용역·정보·콘텐츠 등의 제공·이용·거래·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u>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u> 나. <u>온라인 검색엔진</u> 다. <u>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u> 라. <u>디지털 콘텐츠 서비스</u> 마. <u>운영체제(OS)</u> 바. <u>온라인 광고 서비스</u>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7	[09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철승 등)	<u>온라인 플랫폼 사업자</u> - 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용역·정보·콘텐츠 등의 제공·이용·거래·교환 등과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u>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8	[0924]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신장식 등)	<u>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u> 의 규제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u>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적 시스템</u>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의 재화·용역·정보 등의 검색·중개·이용·거래·교환·광고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090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등)	<u>온라인 플랫폼</u>의 각종 불공정행위 규제 <u>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u>의 의무 규정 <u>온라인 플랫폼 사업자</u> - 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제2조(정의) 2. “온라인플랫폼”이란 <u>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3.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들 간의 재화·용역·콘텐츠(이하 “재화등”이라 한다) 등의 제공·이용·거래·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u>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u>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 간의 재화등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 나. <u>온라인 검색서비스</u>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로부터 키워드, 음성, 문장 등의 입력어로 검색 요청이 있으면 모든 웹사이트에서 입력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는 서비스 다. <u>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u> : 자료 등의 게시, 채팅(chatting) 등을 통하여 정보나 활동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간의 관계를 구축하여 주는 서비스 라. <u>동영상공유서비스</u>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마. <u>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u>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기능을 제어하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software application)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서비스
10	[08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등)	상동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u>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u>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 또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이용자 간의 재화·용역·정보·콘텐츠 등의 제공·이용·거래·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u>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u>: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간의 재화등(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 나. <u>온라인 검색 엔진</u>: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로부터 키워드, 음성, 문장 등의 입력어로 검색 요청이 있으면 모든 웹사이트에서 입력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는 서비스 다. <u>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u>: 자료 등의 게시, 채팅(chatting) 등을 통하여 정보나 활동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간의 관계를 구축하여 주는 서비스 라. <u>디지털 콘텐츠 서비스</u>: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동영상 등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열람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마. <u>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u>: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기능을 제어하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바. <u>온라인 광고 서비스</u>: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서비스
11	[0809]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등)	<u>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u> - 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입점자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간 거래 공정화(입점자 보호) ※ 시장지배적지위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u>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 매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다만, 개인 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와 관련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12	[080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 중개 이용 사업자 (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입점자 보호)) ※ 시장지배적지위에 대한 규정은 없음 역외적용규정(제3조 제1항)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u>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u>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 접수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직접 알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3	[0705] 온	시 장 지 배 적	정의(제2조)

	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 정 화 에 관한 법률 안(박 주 민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의무들 (조 ~ 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 중개 이용 사업자 (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입점자 보호: 조~조))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u>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u>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 또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이용자 간의 재화·용역·정보·콘텐츠 등의 제공·이용·거래·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u>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u>: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 나. <u>온라인 검색 엔진</u>: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로부터 키워드, 음성, 문장 등의 입력어로 검색 요청이 있으면 모든 웹사이트에서 입력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는 서비스 다. <u>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u>: 자료 등의 게시, 채팅(chatting) 등을 통하여 정보나 활동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간의 관계를 구축하여 주는 서비스 라. <u>디지털 콘텐츠 서비스</u>: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동영상 등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열람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마. <u>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u>: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기능을 제어하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바. <u>온라인 광고 서비스</u>: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서비스
14	[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 중개 이용 사업자 (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남근 등)	(입점자 보호) ※ 시장지배적지위에 대한 규정은 없음 서영교 안과 대동소이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15	[06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등)	<u>온라인 플랫폼 사업자</u> - 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입점자 보호)) ※ 시장지배적지위에 대한 규정은 없음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약 전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등의 거래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6	[061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등)	대체로 “<u>특정</u>” <u>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u>로만 구성됨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중심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 중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단 개인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와 관련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	--	--	---

(나) 정 리

이상 법률안들의 온라인 플랫폼 정의규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유형	대상	법안
(1)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정보의 수집, 저장, 검색, 송신, 수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 등을 제공하여) 서로 다른 이용자나 이용자 집단 간 거래 및 정보교환 등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	3, 4, 6, 8, 10, 12, 13, 14, 15
	또는,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2, 5, 7, 9, 11, 16

② 규제 대상 업자

유형	주체적 범위	법안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개시를 알선(중개)	1, 2, 4, 5, 7, 11, 12, 14

	<u>하는 서비스를 하는 자</u> 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 제공 나. 재화 등의 거래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라. 가~라.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u>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청약 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하는 자</u>	3, 8, 15, 16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 또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이용자 간의 재화·용역·정보·콘텐츠 등의 제공·이용·거래·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나. 온라인 검색엔진 다.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마. 운영체제(OS) 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사. 동영상 공유서비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6, 9, 10, 13 (서비스의 태양을 법에 구체적으로 특정 → 경직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음)

II. 바람직한 입법모델

(1) 최광의, 광의(I·II) 모델은 지양함이 상당함

-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거래 과정의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상, ① 규제의 대상행위를, 지적재산권 침해는 물론,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공안(公安) 위협 등 기타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잉이며 외국의 입법례들 가운데 이를 전제로 하는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② 규제의 주체적 범위를 설정함에도 널리 i) 인터넷 망서비스 제공자나, ii) 정보 전달 네트워크나 프록시 서비스 제공자까지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규제의 대상

을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어 비현실적이고 관련 주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이들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포함시킨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인터넷 접속서비스(제102조 제1항 제1호)나 Caching 서비스 (제2호)와 같은 인프라 제공자의 침해책임을 문제된 사안은 아직까지 거의 없다.

- 이처럼 규정의 대상을 협의(狹義) 모델에 기반하여 설계하면서, “(온라인에서) 상품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적 시스템」이나 「설비」를 제공하는 자” 정도로 추상화함으로써 향후 기술이나 거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는 적용대상들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해지면 그 세부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함이 합리적이다.

(2) 협의(狹義) 모델에 기반하여 정의 규정을 설계

상표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안 제2조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이 합당하며, 현재의 상표법 개정안이 위 법안들에 비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규제의 대상	검 토
온라인 플랫폼 입법안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	■ 실질적으로 양자 사이에 차이 없음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 상품(서비스를 포함한다)의 거래
상표법 제2조 제12호 개정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접속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	

	주관적 범위	검 토
온라인 플랫폼 입법안들	(1)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개시를 알선(중개)하는 서비스: 구체적으로, 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 제공 나. 재화 등의 거래에 대한	(1)의 내용은 결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위의 구체적 모습에 해당함. ■ 규정 적용의 객관적 대상을 이처럼 “상품의 거래”라고 일반적으로 정하면 족하고, 굳이 이를 온라인 플랫폼법

	청약의 접수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라. 가~라.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 지원 및 고객관리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비스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나. 온라인 검색엔진 다.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마. 운영체제(OS) 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사. 동영상 공유서비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안들 (1)의 가~라.처럼 구체화 할 필요는 없어 보임. 이는 모두 “상품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위들로서, 해석을 통해 “상품의 거래”에 포섭될 수 있고, 향후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행위유형들을 포함시키는 데도 위 표현이 바람직함 (2)의 내용은 전자적 시스템의 개별 서비스 유형들을 구체화한 것이나, 이 또한 상품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상 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위를 다른 각도에서 열거한 것임 (3) 입법 기술상으로, (1) 또는 (2)처럼 구체적 행위태양을 법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기술이나 거래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구체적 유형들을 포섭하기 어렵게 하여 바람직하지 않음. 오히려, <u>상표법 개정안처럼 이를 상위개념으로 구성하여 법문에 규정하고, 필요 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태양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함이 상당.</u> (4)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은 ‘설비의 제공자’를 규율대상에서 누락하고 있음. ▪ 그러나, 전자적 시스템 외에 서버와 같은 ‘설비(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기능이므로 그 제공자 또한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서버를 다른 주체로부터 임차하거나 해외에서 다른 주체를 통해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상 표 법 제 2 조 제 12 호 개정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 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접속하여 “<u>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u>” 가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u>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하는 자</u>를 말한다.	

		있음(실제 중국의 판례 가운데 이런 사안들이 존재함). ■ 개정법안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라고 규정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상품을 거래하게 할 목적으로” 라고 규정하였다면 해당 전자시스템이나 설비가 오로지 그 목적으로 설치된(專用性) 경우로 한정되지만, 전자(前者)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汎用性)을 가진 전자시스템이나 설비(서버)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상표권의 간접침해에 사용되는 것으로 되면 해석 상 규제가 가능함
--	--	--

(3) 정의개념 추가 개정 모델

이처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에 대한 추가적 표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개정모델은 다음과 같다.

현재안	개정 제안
제2조 제12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접속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12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하 같다)에 접속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강화와 위반에 대한 제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의 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근래 두드러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종전의 조건부 면책 위주의 틀을 벗어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하여 자기 책임 하에 서비스 중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며,⁵⁾ 현재까지는 주로 범죄, 인종차별, 혐오발언, 거짓 뉴스 등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⁶⁾ 향후 그 적용범위가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반으로도 확대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1.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강화

1. DSA의 관련 규정들 / 독일의 DSA 집행법(2024)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강화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는 EU의 DSA(Digital Service Act)이다. 이는 유럽의회에 의해 2022. 10.에 제정되어 2022. 11. 발효되었으며, 2024. 2. 17.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다. DSA의 전신에 해당하는 ‘유럽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이 입법 지침에 불과하여 그에 상응하는 회원국의 개별입법이 필요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DSA는 그 자체가 ‘법(regulation)’으로서 직접 구속력을 가진다.⁷⁾ 특히, EU 회원국은 물론 역외적용 규정에 의해 세계 어느나라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라도 인터넷을 통해 EU 회원국과 연결점을 가지는 이상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규범적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5) <https://www.eff.org/deeplinks/2022/05/platform-liability-trends-around-globe-safe-harbors-increased-responsibility>

6) 대표적으로, 독일의 ‘네트워크 규제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 2017)’은 이용자 2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소정의 범죄규정에 해당하고 ‘명백한 위법성을 띤 경우’에는 게시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위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5000만 유로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프랑스의 ‘공화국 원칙보호에 관한 법률(Loi confortant le respect des principes de la République, 2021)’ 역시 온라인에서의 인종, 문화, 종교에 대한 혐오표현 등을 강력히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 불법 게재물에 대한 통제와 접근 차단 등 제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위반 시 엄격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7) Dania van Leeuwen, Mark Leiser and Lotte Anemaet, “Online Intermediaries and Trademark Owners: The Legal Position and Obligations of Online Intermediaries to Trademark Owners Prior and post-Louboutin v Amazon”, Vol. 15 No. 1 (2024): JIPITEC 15 (1) 2024, p.67.

향후 우리의 입법에 참고할만한 사항 위주로 DSA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에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DSA	독일(Digitale-Dienste-Gesetz): DSA의 독일 내 이행을 위한 법(2024) ⁸⁾
제 6 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i) (a) 불법행위 또는 불법 콘텐츠임을 알지 못하고, 불법행위 또는 불법 콘텐츠가 명백하리라는 사실이나 상황이 없을 것. 또는, (b) 불법행위나 불법 콘텐츠임을 알게 된 후 해당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 ※ 성실한 호스팅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를 통해 세부적인 법률적 검토 없이 관련 활동이나 정보의 불법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위 신고로 인해 제6조의 ‘불법콘텐츠인 것을 안 것’ 으로 본다(제16조 제3항)	제8조(권리침해에 대응한 서비스 차단조치) (1) 사용자는 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전송이나 통신망에 대한 접근 서비스가 자신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사용되었고 권리자로서 자신의 권리 침해를 시정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사용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차단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전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비용에 대해 권리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자와 공모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제1항부터 제3항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3조(벌금)

		제5항: DSA 해당 규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제 9 조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명령) (1) <u>중개서비스 제공자는</u> 관련 국내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유럽연합 준거법 또는 유럽연합 법률에 따른 국내 준거법에 근거하여 하나 이상의 특정 <u>불법 콘텐츠 항목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u>, 해당 명령을 내린 기관 또는 명령에 명시된 그 밖의 기관에 <u>지체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와 그 구체적인 시기를</u> 통지하여야 한다. (2)~(4) 생략 (5)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나 명령을 내린 기관이 명령에서 별도로 명시한 시기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하는 시기에 명령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자에게 수령한 명령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제(2)항에 따른 이유서, 구제가능성, 명령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생략	좌 (1), (5) 위반 시 10만 유로 이하의 벌금(제33조 제6항 제2호, 제5항 제1호)
제 10 조	(정보제공명령) (1) <u>중개서비스 제공자는</u> 관련 국내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유럽연합 준거법 또는 유럽연합 법률에 따른 국내 준거법에 근거하여 1명 이상의 특정 <u>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는 경우</u>, 해당 명령을 내린 기관 또는 명령에 명시된 그 밖의 기관에 <u>지체없이 명령의 수령, 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와 구체적 조치시기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u> (2)~(6) 생략	좌 (1) 위반 시, 10만 유로 이하의 벌금(제33조 제6항 제2호, 제5항 제1호)
제 16 조	(신고 및 조치제도) (1) <u>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u> 사람이나 단체가 불법 콘텐츠로 간주되는 특정 정보 항목의 서비스에 존재한다는 것을 신고할	좌(1), (2) 위반시 30만 유로 이하의 벌금(제33조 제6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고 제도는 접근하기 쉽고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하며, 오로지 전자적 수단으로만 신고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제도는 충분히 정확하고 적절히 입증된 신고 제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신고 제출이 가능케 하고 또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d) 생략] (3) 생략 (4) 신고에 이를 제출한 사람이나 단체의 전자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해당 사람이나 단체에 신고 접수 확인을 발송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신고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결정을 해당 사람이나 단체에 통지하고, 해당 결정과 관련하여 구제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6) <u>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제도에 따라 접수한 신고를 처리하고, 신고와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적시에 성실하고 자의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u> 호스팅서비스 제공자가 위와 같은 처리 또는 결정에 있어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제(5)항의 통지에 그러한 사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종류는 제17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거시되고 있음) <u>(a) 콘텐츠 삭제,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 또는 콘텐츠 강등을 비롯한,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특정 항목의 가시성에 대한 제한</u> <u>(b) 금전 지급의 정지, 종료 또는 그 밖의 제한</u> <u>(c) 서비스 제공의 전부나 일부의 중단 또는 종료</u> <u>(d) 서비스 이용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u>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세부적 법률검토 없이도 침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신고받은 즉시 스스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	항 제2호, 제5항 제8호) 좌(5), (6) 위반시 10만 유로 이하의 벌금(제33조 제6항 제2호, 제5항 제9호)
--	--

	해야 면책 가능하고, 아니면 책임을 짐. 이후, 게시자(서비스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이의신청의 당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조치의 유지나 변경을 결정함(제20조 제4, 5항)	
제 17 조	(이유의 통지) (1)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불법 콘텐츠이거나 이용약관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위a~d의)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 제20조(이의신청)로 연결	좌(1) 위반시 30만 유로 이하의 벌금(제 33조 제6항 제2호, 제5항 제10호)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추가조항 (DSA)		
제 19 조	(극소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적용 제외) (1) 이 절(제19조~제28조)은 EC 권고 제2003/361/EC호에 정의된 극소기업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 EC 권고 제2003/361/EC호: 부칙 제2조 극소기업 - 종업원 수 10명 미만으로서 연간 매출액 또는 자산평가액이 200만 유로 미만인 기업 소기업 - 종업원 수 50명 미만으로서 연 매출액 또는 자산평가액이 1,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	
제 20 조	(이의제기 시스템) (1)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이 항의 결정을 내린 후 최소 6개월 동안 침해의 신고자와 그 상대방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내린 각종의 제한 결정에 대해 전자적 방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이의제기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이의사항을 적시에 차별 없이 성실하고 자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의제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서비스 제한결정에 충분한 근거가 없거나 서비스 제한 사유가 없다는 점, 혹은 신고자의 신고가 부적절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좌(1) 위반시 30만 유로 이하의 벌금(제 33조 제6항 제2호, 제5항 제11호) 좌(4) 위반시 30만 유로 이하의 벌금(제 33조 제6항 제2호, 제5항 제12호)

	제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5)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이의제기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제 21조에 규정된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의 이용 가능성, 기타 구제가능성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한조치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 서비스 제한의 계속이나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유를 통지하되, 실질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소송 외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점이 특징임.	좌(5) 위반시 10만 유로 이하의 벌금(제 33조 제6항 제 2호, 제5항 제 13호)
제 22 조	[공신력 있는 신고자 (trusted flagger)] (1)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지정된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신력 있는 신고자가 제16조의 제도를 통해 제출한 신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위 신고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회원국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인에 대해 ‘공신력 있는 신고자’의 지위를 부여한다. (a) 불법 콘텐츠의 탐지, 식별 및 통지를 위한 특정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b)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로부터 독립적일 것 (c) 성실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신고를 제출하기 위하여 활동할 것 (7) 공신력 있는 신고인을 지정한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 조정자는 직권 조사나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 등 제3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한 조사에 따라 위 신고인이 제(2)항에서 정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신고자 지위를 취소하여야 한다. 디지털서비스 조정자는 위 지위를 취소하기 전에 이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3 조	(반복침해자 · 신고자에 대한 조치) (1)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를 빈번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전 경고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제16조 및 제20조의 신고 및 조치 제도와 이의신청을 통해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 또는 이의신청을 빈번하게 제출한 신고자	

	에 대해 사전 경고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 52 조	(제재금) (1) <u>회원국은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이 규정 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재금 규정을 제정하고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3) 이 규정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해당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6%까지이다.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부정확, 불완전하거나 호도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답변하지 않거나 부정확, 불완전하거나 호도하는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해당 중개서비스의 제공자의 직전 회계연도 연간 소득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1%까지이다. (4)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은 해당 결정에서 특정한 날짜로부터 산출하여 해당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 또는 소득의 5%까지이다.
제 54 조	(보상) 서비스 이용자는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이 규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법률과 국내법에 따라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재금과 민사상 배상은 별개로 존재함을 확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에 대한 특칙 (DSA)	
제 33 조	월평균 이용자수가 4,500만명 이상으로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함(제33조 (1)) 2024. 11. 현재 지정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 Alibaba AliExpress ● Amazon Store ● Apple AppStore ● Booking.com ● Facebook ● Google Play ● Google Maps ● Google Shopping ● Instagram ● LinkedIn ● Pinterest

	• PornHub(added 20 December 2023) • Shein(added 26 April 2024) • Snapchat • Stripchat(added 20 December 2023) • Temu(added 31 May 2024) • TikTok • Wikipedia • X(formerly Twitter) • XNXX(added 10 July 2024) • XVideos(added 20 December 2023) • YouTube • Zalando 초대형 검색엔진은 (VLOSEs): • Bing • Google Search
제 67 조	(정보요청) (1) 집행위원회는 이 절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또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의 제공자와 ... 관련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거래, 사업, 제작 또는 직업상 목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자연인(필자 주: 국내대리인도 여기에 해당)이나 법인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74 조	(과징금) (1) 집행위원회는 관련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또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의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이 규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중략) (2) 제67조 (1)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이나 관련된 자연인 등이 정보제공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8) 2024. 5. 16. 이 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 2017)” 은 폐지되었다.

2. 중국 전자상무법(電子商務法: 2019년 시행)

이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에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가진 기본법이며, 일부 규정은 민법의 관련 규정과 중복된다.⁹⁾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에 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상표법 개정안과도 기본적인 틀에서 상당부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규 정	내 용	비 고
제4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보호규칙을 구축하고 지적재산권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42조	- 지적재산권자는 그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연결차단, 삭제, 거래 및 서비스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권리 침해에 관한 기초적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통지를 플랫폼 내의 경영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u>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장된 손해에 대해 플랫폼 내 경영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u> - 권리자가 잘못된 통지로 인해 플랫폼 내의 경영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는, 법에 따라 민사상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으로 잘못된 통지를 하여 플랫폼 내의 경영자에게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배액의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Notice & Takedown 도입 OSP가 불성실 이행시, 확대 손해에 연대배상책임 부당하게 N/T 요구한 권리자의 배상의무 명시
제43조	플랫폼 내의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권리침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위 주장에는 권리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기초적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N/T에 대한 판매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자의 소제기 등

9) 최고 인민법원은 2020. 9. '전자상무플랫폼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의 심리에 관한 지도의견'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는 전자상무법의 관련 규정을 보충하고, 구체적 해석, 운용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주장을 전달 받은 후 이를 해당 지적재산권자에게 전달하면서, 관련 부서에 소청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위 주장이 지적재산권자에게 전달된 후 15일 이내에 권리자로부터 소청의 제기나 제소의 통지가 없으면 즉시 취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절차
제4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본법 제42조, 제43조의 통지, 주장 및 처리결과를 적당한 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차단, 삭제, 거래 및 서비스 종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에 대한 인식이나 인식 가능성 있는 OSP의 자발적 조치의무
제8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본 법 제42조,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운영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 관리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u>운영자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미이행에 대한 벌금 제재

II.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 정리

1. 해외 규정들

DSA	
제 52조	(제재금) (1) 회원국은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이 규정 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재금 규정을 제정하고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 규정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해당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6%까지이다.중개서비스 제공자가 부정확, 불완전하거나 호도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답변하지 않거나 부정확, 불완전하거나 호도하는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해당 중개서비스의 제공자의 직전 회계연도 연간 소득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1%까지이다. (4)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은 해당 결정에서 특정한 날짜로부터 산출하여 해당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 또는 소득의 5%까지이다.
제 74 조	(과징금) (1) 집행위원회는 관련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또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의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이 규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중략) (2) 제67조 (1)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이나 관련된 자연인 등이 정보제공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중국 전자상무법	
제 84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본 법 제42조,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운영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 관리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운영자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이행에 대한 벌금 제재
제 42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통지를 플랫폼 내의 경영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장된 손해에 대해 플랫폼 내 경영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자와 연대 배상 책임

제 45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차단, 삭제, 거래 및 서비스 종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	--	--

2. 우리나라

가. 전자상거래법

규 정	규제의 종류	내용(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32조	시정조치명령	제1항 제1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판매자 신원정보의 제공의무 위반(제9조 제3항)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위반(제9조의2 제3항)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업자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제공의무 위반 등(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40조	벌칙	제2호: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5 조 제3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1호: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의2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

		다)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 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 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2024. 8. 12. 국회제출(정부안) ▪ 제1의2호: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 제1의3호: 제20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제1의4호: 제20조의4 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요구받은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관련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나. 상표법 개정안

규 정	규제의 종류	내용(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 108 조 의2 제1항	간접침해 책임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타인의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이 침해되고, 그에 대해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 237 조 제1항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권리자의 침해주장에 따른 Notice & Takedown 조치 (제108조의3 제2항) 미준수 또는 N/T 절차에 대한 사전 공지(제108조의3 제5항) 미이행으로 인해, 특허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제108조의3 제7항)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호),

		▪ 권리자의 요청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이 서비스이용자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라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2호),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제108조의6 제1항),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제2항), 국내대리인 지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제3항) ▪ 특허청장이 상표보호를 위한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제108조의7 제2항)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4호)
--	--	--

제4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규모 구별

향후 상표법의 개정 수요에 따라 i)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달리 정하거나, ii)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것인지 여부와 제재의 내용을 달리 정하거나, iii) 특정 규모 이상의 해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만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외의 다수 선례들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규모에 따른 차등규율을 하고 있는 바, 그 차등의 사유와 법적 취급을 정리·점검해 둬으로써 향후 법 개정 시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외국의 예

가. DSA

규 정	내 용	비 고
제 19 조 ; EC 권고 2003/361/E C호 부칙 제2조	▪ 극소플랫폼 - 종업원 수 10명 미만으로서 연간 매출액 또는 자산평가액이 200만 유로 미만인 온라인 플랫폼 ▪ 소 플랫폼 - 종업원 수 50명 미만으로서 연 매출액 또는 자산평가액이 1,000만 유로 미만인 온라인 플랫폼	정보제공(제10조)/ <u>연락창구확보(제11조, 제12조)</u>/ 법률대리인 지정(제13조)/ 투명성보고서 공개(제15조)/ 신고 및 조치제도(제16조)/ 범죄 혐의 신고(제18조)와 같이, <u>‘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까지만 부담하고,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에게 부과되는 추가의무들은 면제함</u> ※ 상표법 개정안에 포함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대부분이 DSA의 소형 플랫폼에게도 적용되는 것들을 알 수 있음
제33조 (1)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월평균 이용자수가 4,500만명 이상으로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된 경우	위험평가 및 위험경감, 위기대응체계(제34~36조)/ 독립적 감사(제37조)/ 추천시스템 중 프로파일링 이외의 옵션 선택(제38조)/ 데이터 공유(제40조)/ 준법감시(제41조) 등 초

		가의무를 부담하고,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도 특별규정 있음(제74조)
--	--	---

나. 미국 Inform Consumer Act

규정	내용	비고
[(f)(3)(A)]	과거 24개월 사이에 연속 12개월 동안 신제품에 대해 200건 이상의 거래실적이 있고 총 거래액이 5,000달러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신상정보를 수집, 업데이트 및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대상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규모가 아니고, 판매자의 규모가 문제됨
[(b)(1)(A)]	연간 판매량이 20,000달러 이상인 대량 판매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신상정보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대상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규모가 아니고, 판매자의 규모가 문제됨

2. 우리나라의 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

2024. 11.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인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들은 적용대상인 플랫폼의 규모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이 상표법과는 같지 않으므로 곧바로 상표법에 준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상표법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규모에 따라 의무 범위를 달리 정하려 한다면 시사하는 바가 많고 규범간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으므로, 향후 이들을 참고하여 상표법 해당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다만 입법기술상, 법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규모에 따라 규정의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만을 밝혀 두고 그 구체적 규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 법안 일괄

연 번	법안명 [제안일자]	주요 사항	규모 관련 규정
1	[1101]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 창민 등)	시 장 지 배 적 온라인 플랫 폼 중개사업 자의 규제	제2조 2. “시장지배적 플랫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기준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1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정 행동을 취한 이용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기준 월평균 활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1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정 행동을 취한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만명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활성 이용자 또는 활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를 1개월로 환산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3조원 이상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조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할 당시 시가총액이 30조원을 초과하는 회사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110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 - 플랫폼 중개 이용 사업자 (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

	창민 등)		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하 “중개거래금액”이라 한다)이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중개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10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민 병덕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 중개 이용 사업자 (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제3조 ②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등을 통한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하 “중개거래금액”이라 한다)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중개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10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시 장 지 배 적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 자의 규제	제4조 제1항(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 준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중개 이용 사업자 (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거래금액(소비자가 중개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하 “중개거래금액”이라 한다)이 1조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중개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제4조 제1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일정요건 갖춘 사업자
5	[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 납근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 중개 이용 사업자 (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제2조 제3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6	[100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법률안 (천준호 등)	시 장 지 배 적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 자의 규제	제5조, 제6조(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인 자 중, 1. 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 2. 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월평균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월평균 5만 개 이상일 것
7	[09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 칠승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 중개 이용 사업자 (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제2조 제3호(법 적용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8	[0924]	시 장 지 배 적	제5조, 제6조(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신장식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규제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인 자 중, 1. 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 2. 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월평균 1천만 명 이상일 것 3.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월평균 5만 개 이상일 것
9	[0909]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등)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의무 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제2조 제12호)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또는,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1.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인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인 경우 3.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수가 월평균 1천만명 이상인 경우 4.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수가 월평균 5만개 이상인 경우 제6조(시장지배적지위 플랫폼 지정) 제5조의 플랫폼 중, 추가 요건 충족시
10	[08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등)	상동	상동 -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 정의(제2조 제12호 → 제2조 제4호) -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 (제5조 → 제16조) / (제6조 → 제17조)
11	[0809]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 플랫폼 중개 이용자(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입점자 보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제2조 제3호)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또는,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12	[080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 정 화 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 중개 이용 사업자 (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입점자 보호))	[적용범위] 제3조 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하 “중개거래금액”이라 한다)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중개거래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지배적 지위나 대규모 플랫폼에 한정하지 않는 출발임(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으면 동법 적용도 없다: 제4조)
13	[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의무 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제2조 제4호)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박주민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 중개 이용 사업자와 입점자 간 거래 공평화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또는,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제5조(대규모 온라인 중개 플랫폼 신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30조원 이상인 자는 그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 2.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수가 월평균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월평균 5만 개 이상일 것 제6조(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 제5조의 플랫폼 가운데 일정 요건 충족시 공정위
--	---------	---	---

			지정
14	[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 중개이용 사업자 (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입점자 보호) ※ 서영교 안과 대동소이	제2조 제3호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15	[06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 중개이용 사업자 - 입점자 간 거래 공정화	김현정 안과 동일
16	[061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	대체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로만 구성됨	※ 규제대상 플랫폼 규모에 대한 제3의 모델 일반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모한정 없음(정의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를 안(오기 형 등)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중심	말한다(제2조 제3호) “특정”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제2조 제4호)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또는,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	----------------	---	---

나. 규모의 유형별 정리

유 형	규 모	규율 대상	법안
1-1	-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기준 월평균 활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2만명 이상이고 (+), - 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30조원을 초과하는 회사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1
1-2	1.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인 경우 또		9, 10, 13

	는, 2.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인 경우 또는, 3.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수가 월평균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4.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월평균 5만개 이상인 경우		
1-3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인 온라인플랫폼 중 - 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 - 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월평균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월평균 5만 개 이상인 경우		6, 8 (단, 규모에 관한 두 요건이 <또는> 관계임)
1-4	- 직전 사업연도에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또는, - 직전 사업연도에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특정 온라인 플랫폼	16
2-1	- 직전 사업연도에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 직전 사업연도 중개거래금액이 1조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온라인 플랫폼	4, 5, 7, 11, 14
2-2	- 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 또는, - 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2, 3, 9, 10, 12, 13, 15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		
--	---	--	--

3. 입법 제안

가. 일반론

- ① 각 법안들이 제시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중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정도의 대규모 플랫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1-1)~(1-4) 유형들은 상표법의 규정 목적과 거리가 멀고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채택하기 어렵다. 결국, 일반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 (2-1) 또는 (2-2)의 모델들을 기초로 하되,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1)을, 좁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2) 규정모델을 기준으로 한 뒤, 업계의 실정 등을 종합 감안하여 구체적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 ②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상 책임은, 성립이 인정되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이 감안되어야 하고,
- ③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만 민사상 책임요건과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단, 정보제공 의무 미 준수에 대한 과태료는 규모에 관계 없이 부과).
- ④ 그 밖에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는 규모에 따라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문제가 되는 외국 소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대형 플랫폼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굳이 규모에 따른 차등 규율 조항을 둘 실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고, 일반적으로 지정의무를 부과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해외 소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특수성과 그 대책

- ① 한편, 앞서 본 예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적용 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해외 온라인 사업자는 국내법인과는 달리 매출액 규모를 당국이 확인하기 어려워 법 적용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처럼 일정 기간동안의 ‘이용자 수’나 ‘트래픽’ 등을 기준으로 규모를 정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
- ② 나아가, 해외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사유를 특정하여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제출명령은 국내대리인을 통해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점들은 뒤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입법 착안점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5절. 국내대리인 제도

1. 주요 외국의 예

국내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는 주요 외국의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EU 일반정보보호규범(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EU 2016/679)

가. 일 반

GDPR은 EU이나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해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EU 회원국들이라면 별도의 국내 입법 없이도 직접 적용되는 일반 법규범이다(2016. 4. 27. 제정, 2018. 5. 시행). EU 역외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거나 수탁처리하는 자에게 EU 역내의 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나아가 역외의 정보처리자는 EU 역내에 대리인을 두어야 하며(제27조 제1항), 그를 통해 GDPR의 각 규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EU 내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하는 정보 관리자 또는 정보처리자의 GDPR 상 의무에 관하여 이들 각각을 위하여 행동하면서, 다음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나. 대리인의 주된 의무

- ① 대리인은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GDPR에 관한 의무에 기반한 행위를 대리한다[전문 제80단락, 제4조 제17항].
- ② 정보 제공에 관한 GDPR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대리인의 신원과 연락처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하는 정보관리자 또는 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정보관리자 또는 정보처리자의 대리인은 이들의 책임 아래 처리 활동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GDPR 제30조) 이러한 기록의 유지는 정보관리자·정보처리자와 대리인 간의 ‘공동의 의무’ (joint obligation)가 된다.

- ④ EU에 설립되지 않은 정보관리자 또는 정보처리자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모든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서 대리인이 기록을 유지하고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⑤ 대리인은 정보관리자 또는 정보처리자에게서 받은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직무에는 GDPR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관하여 소관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EU 역외 정보관리자 또는 정보처리자의 의무 준수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대리인을 접촉할 것이고, 대리인은 요청 감독당국과 EU 역외 정보관리자 또는 정보처리자와 정보 또는 절차적 교환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⑥ EU 내 대리인의 지정으로 GDPR에 따른 정보관리자 또는 정보처리자의 ‘의무와 법적책임(responsibility and liability)’은 영향을 받지 않고, 정보관리자 또는 정보처리자 자신에게 개시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정보관리자 또는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대리인에게 집행조치가 개시될 수 있다. 대리인이 스스로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GDPR 규정상 감독기관의 시정권한(제58조 제2항)과 그 일환으로서의 과징금 부과권한(제83조)에 근거하여 대리인에게도 과징금과 벌칙이 있다.¹⁰⁾¹¹⁾ 다만, 이 경우 대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대리인에게 의무가 부과된 i) 정보처리기록 보존(제30조)을 게을리 한 경우와, ii) 대리인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고도(제58조 제1항) 응하지 않은 경우 정도로 한정된다고 한다.¹²⁾

이처럼 GDPR이 대리인에 대해 과태료 등 직접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대리인 스스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직접 보호할 책임은 없다고 하는 것¹³⁾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DPR의 이런 태도는 절대적인 시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에게 스스로 상표권자의 권리를 직접보호할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모델을 취한다면 당연히 대리인에게도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본인과 대등한 책임을 병과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입법적 선택이나 제도설계의 문제로 보이며, 아래에서 보는 대로 국내 선행입법들이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내대리인

10) 박노형, 정명현,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법제연구 제56호(2019), 107-019면.

11)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Guidelines 3/2018 on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GDPR Article 3, Version 2.1(2019), p.28.

12) 위 가이드라인 p.28.

13) 김민희 외3,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2021), 16면.

의 의무 범위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취하고 있으며, 상표법 개정안 또한 그 개정 목적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직접 의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반 과태료의 부과 범위도 그에 따라 신축적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2. NIS2 Directive (범 유럽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지침)

가. 일 반

해당 지침은 유럽 내 디지털 서비스에 관련된 사이버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제정되고 2023년 개정되어 2024년 10월부터 발효되는 EU지침이며, 대상자는 DNS 서비스 제공자 / TLD 이름 레지스트리 / 도메인 이름 등록 서비스 제공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 데이터 센터 서비스 제공자 /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제공자 / 관리 서비스 제공자 / 관리 보안 서비스 제공자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검색 엔진 또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플랫폼)이다.

나. 국내대리인 규정 [전문 제116조, 본문 제26조(3), (4)]

- 유럽 연합내에 사업장이 없으나 유럽연합 내에서 사업을 하는 위 주체들은 유럽 연합 회원국에 국내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대리인의 지정으로 인해 해외 본인의 법적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국내대리인은 명확한 권한위임을 서면으로 받아 해당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행동하며, 특히 사고의 보고 의무 등이 그러하다.
- 대리인은 각 회원국의 당국과 연락창구 역할을 한다.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3. EU AI법

가. 일반

EU AI법(Regulation (EU) 2024/1689)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규율의 통일을 목적으로 유럽의회에서 제정되어 2024년 8월부터 발효된 법이다.

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유럽연합 외부에 설립된 고위험 AI 시스템 또는 일반 용도 AI 모델 제공자는 시스템을 유럽 연합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서면 위임을 통해 유럽 연합에 설립된 국내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2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업체의 국내대리인

① 제3국에 설립된 공급업체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서면 위임을 통해 유럽연합에 설립된 국내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생략)

③ 국내대리인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제47조 소정의 EU 적합성 선언과 제11조 소정의 기술 문서가 작성되었으며 공급자가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것

b. 제74조(10)에 언급된 당국이나 기관의 처분에 따라 고위험 AI 시스템이 출시되거나 가동된 후 10년 동안, 국내대리인을 임명한 공급자의 연락처 정보, 제47조에 언급된 EU 적합성 선언 사본, 기술 문서 및 해당되는 경우 통보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보관하는 것

c.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고위험 AI 시스템이 법문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 및 문서를 관계당국에 제공하는 것(고위험 AI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로그에 대한 접근 포함)

d.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고위험 AI 시스템과 관련하여 당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당국과 협조하며,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 완화하기 위해 협조하는 일

e. (생략)

④ (생략)

[제54조] 일반 용도 AI 모델 제공업체의 국내대리인

① 제3국에 설립된 공급업체는 일반용도 AI 모델을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서면 위임을 통해 유럽연합에 설립된 국내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생략)

③ 국내대리인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부록 X에 명시된 기술 문서가 작성되었고 제53조와 제55조 소정의 일반용도 AI 모델 제

공업체 의무가 공급자에 의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 b. 시장에 범용 AI 모델이 출시된 후 10년 동안 부록 X에 명시된 기술 문서 사본을 AI 사무국 및 국가 유관 기관에 보관하고, 국내대리인을 임명한 공급업체의 연락처 정보를 보관하는 것
- c. 이 장의 의무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AI 사무소에 제공하는 것
- d.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AI 사무국 및 당국과 협력하여 일반 목적의 AI 모델과 관련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협조하는 것

④ ~⑥ (생략)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4. 미국 SHOP SAFE 법안(2024)

가. 일 반

2023년 법안의 대안으로 2024. 6. 11. 하원에 제출된 법안으로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등이 거래되는 경우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표법(1946)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전체 법안 내용의 검토는 1차 보고서 12면 참조).

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4) (B)	플랫폼은 해당 판매자의 침해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의무이행에 관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된다			면책조건 제시
		다음 사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할 것		
	(i)	(I)	판매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서비스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 등록한 점	외국 기 업의 국 내대리인 지정의무
		(II)	(I)에 따라 등록 대리인을 지정이 필요하	

			지 않은 미국 내 판매자의 경우 국내의 서비스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주소를 확인한 점	
--	--	--	--	--

(4) (B) An electronic commerce platform shall not be subject to contributory liability under subparagraph (A) if the electronic commerce platform demonstrates that the platform took reasonable measures to implement each of the following steps to prevent infringing use by the applicable third-party seller on the platform before that infringing use:

- (i) Determined after an investigation and periodically confirmed—
- (l) that the third-party seller designated a registered agent in the United States for service of process; or
- (ll) in the case of a third-party seller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that has not designated a registered agent under sub clause (l), that the third-party seller has designated a verified address for service of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다. 해 설

미국법 상 법인의 등록 대리인 (registered agent)이란, 법인을 대신하여 공적 서신을 받도록 지정한 제3자 개인 또는 사업체(예컨대 로펌)를 말한다. 이러한 서신에는 소송 절차, 주(洲) 문서, 세무 정보 및 법원 소환장이 포함되며, 등록 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사업에 대한 공식 연락창구가 된다. 등록 대리인은 법인이 위치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주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주에 실제 주소가 있어야 한다.¹⁴⁾

SHOP SAFE 법안(2024) 제4조 (B)(i)(I)에 의하면,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품 판매자가 외국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가 미국 내 등록대리인을 지정,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확인하여야만 사후에 발생하는 상표침해 분쟁에서 기여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SHOP SAFE 법안은 플랫폼이 미국 내에 존재하고 ‘판매자(플랫폼 이용자)’가 해외에 존재하는 경우 후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미국내 플랫폼이 강제·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외국에 존재하는 플랫폼의 국내대리인을 미국 내에 두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일응 우리 상표법 개정안에서 의도하는 국내대리인 제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등록대리인의 법적 위상 및 대

¹⁴⁾ Black’s Law Dictionary (12th ed. 2024), agent.

리의 범위가 공적 서신의 수발 중심이라거나, 법적 연락창구의 역할로 제한되어 있음은 참고할 만한 점이다.

5.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가. 일 반

2017년 제정된 이 법은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진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레딧,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적 적용대상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 범죄모의, 테러 및 폭력 선동, 아동포르노 등 독일 형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에 대해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삭제 등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어기면 소셜미디어 기업주는 최대 500만 유로, 해당 기업은 최대 5,000만 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 기업이 독일 외의 국가에 존재하더라도 역외적용되며, 실효적 적용을 위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거나 법집행 절차의 서면을 수령하는 등 역할을 담당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제5조).

이 법은 독일이 2024년 Digitale-Dienste-Gesetz(DSA의 독일 내 이행을 위한 법: 2024. 5. 16. 시행)을 시행함에 따라 폐지되었지만, Digitale-Dienste-Gesetz 제33조가 DSA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규정(제13조)를 직접 원용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할 뿐, 국내대리인에 대한 독일 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폐지 전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NetzDG) 제5조의 국내대리인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제5조] (국내대리인)

다른 회원국을 거주국으로 하지 않고, DSA 제2조에 의한 거주국가 간주도 적용되지 않는 곳에 소재한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독일에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독일 내 대리인을 임명하고 플랫폼을 통해 쉽고 즉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대리인에게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대리인은 불법 콘텐츠의 배포 또는 그 시도로 인해 독일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적 문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삭제되거나 차단된 콘텐츠의 복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하다. 국내 대리인의 그러한 임무는 법적 절차의 개시로부터 최종판결의 확정 및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통해 존재한다.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6. DSA(Digital Service Act)

가. 일 반

EU 내에 소재하지 않으면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적 책무 수행이나 법 위반 시 원활한 의사연락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 중 한 곳에 법적 대리인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나.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

(1) 전문 제44 단락

제3국에 설립되어 유럽연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유럽연합 내에 충분한 위임을 받은 법률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법률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관련 당국에 제공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지정된 법률대리인이 관련당국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한 집단의 자회사 또는 모회사가 유럽연합에 설립된 경우,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그 자회사 또는 모회사를 제공자로 지정하는 것이 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한 의무는 효과적인 감독과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자와 관련한 이 규정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대리인은 국내법에 따라 복수의 중개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는 한, 법률대리인이 연락 창구로서 기능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제13조

제1항: 유럽연합에 사업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유럽연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 중 하나에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할 법인 또는 자연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관할당국, 집행위원회, 이사회가 내린 결정의 수신, 준수 및 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위 제공자와 함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회원국의 관할당국, 집행위원회, 이사회와의 적시의 효율적인 협력을 보장하고 위 기관들의 결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자원을 법률대리

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항: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법률대리인이 소재하거나 설립되어 있는 회원국의 당국자(디지털서비스 조정자)에게 법률대리인의 성명, 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내대리인의 책임

지정된 법률대리인은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기될 수 있는 책임과 법적 조치와 관계 없이 이규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제3항). 법적 대리인은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¹⁵⁾¹⁶⁾¹⁷⁾

이처럼 법률대리인이 본인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DSA 위반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스스로 DSA 위반에 대해 직접책임(direct liability)을 질 수 있다는 부분이 DSA의 이행에서 가장 ‘걸끄러운(sticky) 점’이라는 논평도 나오고 있다.¹⁸⁾

7. DSA의 독일 내 이행을 위한 법(2024. 5. 16. 시행)

국내대리인 제도의 이행을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DSA 제13조 제1, 2항항 위반 시: 10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3조 제6항 제2호, 제5항 제2호)
- (2) DSA 제13조 제4항 위반 시: 10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3조 제6항 제2호, 제5항 제4호).

8. 일본 電氣通信事業法(2020)

가. 일 반

해외에서 이메일 서비스, 메시지 서비스 등 타인의 통신을 중개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일본 내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가 적용됨을

15) <https://www.lw.com/admin/upload/SiteAttachments/Digital-Services-Act-Practical-Implications-for-Online-Services-and-Platforms.pdf> (p.6).

16)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d2c6982-8174-4b8d-860d-fb98513b6780>.

17) <https://www.mondaq.com/compliance/1395628/making-sense-of-the-digital-services-act-dsa-why-and-when-your-online-business-needs-a-legal-representative>

18) <https://www.privacyworld.blog/2024/02/eu-digital-services-act-in-full-force/>

명시하고 있고, 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법 제10조). 도입 배경은, 국외에 거점을 두고 일본 내에 전기통신설비를 갖지 않은 채 일본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용자 정보의 대량 누설이나 대규모 통신 장애 등을 야기한 경우 국내외 사업자들 사이에서 경쟁상의 불공평 없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외 사업자가 일본에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신고시 국내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행 관할권을 일본 당국이 획득하고 업무개선명령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¹⁹⁾

나. 국내대리인

(1) 관련 규정

제10조(전기통신사업의 등록)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외국법인 등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대표자 또는 국내에 있어서의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국내 주소

제16조(전기통신사업의 신고) 전기통신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외국법인 등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대표자 또는 국내에 있어서의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국내의 주소

제50조의3 제4호: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대표자나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자는, 총무대신으로부터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제50조의2 제1항)’를 받을 수 없다.

※ 아울러 국내대리인(대표자)의 이메일 주소도 신고 대상이 되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적법하게 일본 행정당국의 행정처분 등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²⁰⁾

19) 일본 총무성 2017년 고시 제297호: 전기 통신 사업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 라인 해설(2021년 갱신).

(2) 국내대리인의 위상

총무성의 법해석 지침에 의하면, 국내대리인은 주로 총무대신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발하는 행정 처분에 관한 통지나 법령위반행위자의 성명공표에 앞선 의견진술기회 통지 등의 수령 주체가 되는 등 총무성과 국외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연락에 대해 총무성과 국외사업자 간의 창구역할을 상징하고 있다.²¹⁾

요컨대, 개정된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외국에 있는 구별 없이, 동법의 각종규정들을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하는 한편,²²⁾ 외국 법인의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나 각종 규제에 대한 “연락창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3) 적용범위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의 제반 규정은 외국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이용자 비밀보호(법 제4조), 이용의 공평(제6조), 사업의 신고(제16조), 사업의 정지, 폐지 및 해산(제18조), 사업정지 등의 보고(제28조), 업무개선명령(제29조), 보고와 검사(제166조), 법령위반자에 대한 성명공표(제167조의2) 규정이 그러하다.

국내대리인은 위와 같은 행정당국의 구체적 처분을 수령하거나 상응하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외국 법인과 행정당국 사이의 연락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²³⁾

(4) 국내대리인의 책임

외국법인의 행위위반에 대해 국내대리인에게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9. 정 리

이상의 비교법적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일본 총무성 https://www.soumu.go.jp/menu_seisaku/ictseisaku/denkitsushin_suishin/tetsuzuki/kokunai.html.

21) 「電気通信事業法及び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省令等の整備について」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33071.pdf.

22) 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平成 29 年総務省告示第 152 号 最終改正平成 29 年総務省告示第297 号)の解説, 9면: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35774.pdf.

23) 입법해설: 外国法人等が電気通信事業を営む場合における 電気通信事業法の適用に関する考え方, 総務省 学術雑誌『情報通信政策研究』 第 5 巻第 1 号, IV-53~56면.

나라	대리인의 역할(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비고
GDPR (유럽)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가 준수해야하는 GDPR에 관한 의무 또는 행동에 대해 대리 정보주체와 피대리인(정보관리자/정보처리자) 사이의 연락 감독당국과 피대리인(정보관리자/정보처리자) 사이의 연락 정보처리활동 기록의 유지 감독당국의 피대리인에 대한 집행조치의 수령	과징금: i) 정보처리기록 유지의무 위반 ii)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국내 대리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범위는 넓고, 위반 시 책임범위는 제한적임
N I S 2 Directive (유럽)	- 위임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행위 → 특히 사고의 보고 - 대리인은 각 회원국의 당국과 연락창구 역할	위 반 에 대한 책 임 규정 없음	
EU AI법	a. 제47조 소정의 EU 적합성 선언과 제11조 소정의 기술 문서가 작성되었으며 공급자가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했는지 확인 b. 제74조(10)에 언급된 당국이나 기관의 처분에 따라 고위험 AI 시스템이 출시되거나 가동된 후 10년 동안, 국내대리인을 임명한 공급자의 연락처 정보, 제47조에 언급된 EU 적합성 선언 사본, 기술 문서 및 해당되는 경우 통보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보관 c.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고위험 AI 시스템이 법문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입	규정 없음	

	증하는 정보 및 문서를 관계당국에 제공하는 것 (고위험 AI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된 로그에 대한 접근 포함) d.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u>고위험 AI 시스템과 관련하여 당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당국과 협조하며,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고 완화하기 위해 협조</u>		
S H O P SAFE 법안 (2024), (미국)	판매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서비스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 등록	플랫폼이 미국 내에 존재하고 ‘판매자(플랫폼 이용자)’가 해외에 존재하는 경우 후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미국내 플랫폼이 강제·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외국에 존재하는 플랫폼의 국내대리인을 미국 내에 두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아님	
네트워킹 집행법 (NetzDG: 독일)	- 불법 콘텐츠의 배포 또는 그 시도로 인해 독일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적 문서를 제공하는 역할 - 특히 삭제되거나 차단된 콘텐츠의 복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규정 없음	
DSA(유럽)	회원국의 관할당국, 집행위원회, 이사회가 내린 결정의 수신, 준수 및 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위 제공자와 함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처리 <u>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기될 수 있는 책임과 법적 조치와 관계 없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부담</u>		
전기통신 사업법(일본)	외국 법인의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나 각종 규제에 대한 “연락창구”	규정 없음	

II. 국내의 상황

국내의 국내대리인 제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입법례들

가.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1) 규정의 내용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제6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대상이 되는 사업자(규모): 시행령 제19조

-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3)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제재(법 제76조 제2항 4의2호)

2,000만원 이하 과태료

(4) 국내대리인의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4조 제1항의 사유들을 이유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

[제64조 제1항의 사유들]

-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

(1) 규정의 내용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 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 시행령 제32조의3

-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

(3)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제재 : 법 제75조 제3항 제2호

2,000만원 이하 과태료

(4) 국내대리인의 의무

-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 제63조 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1) 규정의 내용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 제3항및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 제2항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 법 제22조의7 제1항, 시행령 제30조의8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인 자

(3) 국내대리인 미지정 혹은 부적정 지정에 대한 제재 (법 제104조 제3항 제1의3호)

2,000만원 이하 과태료

(4) 국내대리인의 의무

- 제22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 제22조의7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2024. 8. 20.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1) 규정의 내용

제20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 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제1호 나목의 사항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의 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법안 제20조의4 제1항)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내대리인 미지정시 제재(법안 제45조 제3항 제1의2목)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국내대리인의 의무(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안 제20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25조의2)

- ①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는 것
- ②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하는 것

- ③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

(나) 자료 등의 제출·일시보관 (법안 제20조의4 제1항 제2호 나.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료·물건의 제출 등 처분의 이행 (제81조 제1항 제3호: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명해지는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마. 상표법 개정안 (2024. 11. 19. 제출, 의안번호 제2205684 이철규 등)

(1) 규정의 내용

제108조의6(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08조의3제1항에 따른 요구의 수리
2. 제108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통보 및 공지 등의 이행
3. 제108조의3제7항 본문 및 제8항의 명령에 따른 조치, 공지 또는 자료 제시의 이행
4. 제108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에 대한 수리
5. 제108조의4제4항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제108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⑤ 이 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통지·신고나 문서의 송달 등은 국내대리인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효력이 있다.
- ⑥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⑦ 특허청장은 제2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인한 과태료를 국내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2) 대상이 되는 사업자 규모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제재 (법안 제237조 제1항 제3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국내대리인의 의무

- Notice & Takedown 절차에 따른 당사자 간 요구의 수리, 조치, 통보 및 공지 등의 이행, 특허청장으로부터의 조치, 공지 또는 자료 제시의 이행 등 (제108조의3)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법정 절차 (제108조의4)
- 특허청장에 의한 서면실태조사에 응할 의무 (제108조의7)

2. 요약

이상 국내법의 현황 요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본인) 규모	국내대리인의 책무
정보통신망법	▪ 매출액(연 1조원 /100억원)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로 한정
개인정보보호법	▪ 매출액(연 1조원) ▪ 3개월 간 정보처리자 수(일평균 100만건)	해외 본인의 실체적 업무를 국내대리인의 책무로 동일하게 인정
전기통신사업법	▪ 3개월간 평균 국내이용자 수(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

	평균)100만 3개월간 평균 국내 트래픽 수(전체 국내 업체 3개월 트래픽 수의 1% 이상)	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할” 실체적 의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비자불만 접수 분쟁처리기준 고지 분쟁처리결과 통지 등 절차적 책임
상표법 개정안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Notice & Takedown 절차 피의침해자의 정보제공 특허청장의 서면실태조사

III. 향후 법 개정의 착안점

1.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가.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문제점

해외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는 국내사업자와 달리 금융감독원 전자공지시스템(DART)에 매출액을 공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국이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규제에 있어 국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와의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중 매출액은 낮으나 트래픽은 많아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큰 업체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우려도 있다.²⁴⁾ 따라서 매출액 대신 혹은 그와 병렬적으로 이용자 수 혹은 트래픽 규모를 기준으로 대리인 지정의무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²⁵⁾

나아가, 해외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0조의4 제6항 참조), 이러한 제출명령은 국내대리인을 통해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24) 한국법제연구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2023), 119-120면.

25) 한국법제연구원, 위 보고서, 115면.

나. 국내대리인의 실효적 접촉가능성 제고 필요

선행 국내 입법들이 대체로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 연락수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접촉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상당수 인것으로 실증조사되고 있다.²⁶⁾ 나아가 연락이 되더라도 회신이 없거나, 회신이 지연되거나, 다른 언어로 회신하는 등 제도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국내대리인이 변경되고도 그 변경사항을 적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지 않은 경우도 지적되고 있는 등,²⁷⁾ 국내대리인에 대한 연락곤란이나 응답지연 혹은 불성실한 응답 등이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일차적이고도 비중 높은 문제이다.

따라서, ① 접촉가능한 국내대리인의 연락수단 표시와 ② 연락을 받은 이후 적절한 시간 내에 응답을 할 것, ③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즉시 그 변경내용을 공지할 것 등을 규정을 통해 강제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국내대리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모호성

상표법 개정안 제237조(과태료)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하면서, i)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자의 침해주장에 따른 조치(제108조의3 제2항)나 Notice & Takedown 절차에 대한 사전 공지(제108조의3 제5항)를 하지 않아 특허청장으로부터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제108조의3 제7항)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237조 제1항 제1호), ii) 권리자의 요청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이 서비스이용자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라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237조 제1항 제2호), iii) 특허청장이 상표보호를 위한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제108조의3 제2항)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237조 제1항 제4호)를 열거하고 있다.

해당 사항들은 모두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제108조의6 제1항 각호)에 속하며, 특허청장은 제2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인한 과태료를 국내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제108조의6 제7항).

그러나 한편, 제108조의6 제6항은,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26) 한국법제연구원, 위 보고서, 117면.

27) 한국법제연구원, 위 보고서, 116면.

위반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고 하여 법 위반의 효과는 해외 본인(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7항과 상충한다.

특히, “...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제237조 제1항 각호(과태료 대상)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엄격히 문언해석을 한다면 국내대리인의 “부작위” 가 해외 본인의 “작위” 로 되어 책임근거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 예컨대, DSA 제13조 제3항처럼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계 없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는 선언적 규정을 두거나, ii) 제237조 제1항이 해외 본인과 국내대리인에게 모두 적용됨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제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법안	시행령 안(잠정 기준)	해 설
제108조의6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 제108조의6 제1항의 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1. 온라인 플랫폼 법안(2, 3, 9, 10, 12, 13, 15)의 매출액 기준 규모참조 2. 전기통신사업법과 동 시행령이 정한 ‘트래픽’ 기준 규모 참조

		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인 자	
	현행 법안	개정 제안	시행령 안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내대리인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특허청장 등과의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고, 연락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 [당사자나 특허청장 v. 국내대리인] 간의 연락수단 확보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v. 국내대리인] 간의 연락수단 확보보다 더 중요함	법 제108조의6 제4항에 따른 조치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연락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연락을 확인한 사실을 연락을 한 자에게 알리는 것 2. 제1호의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u>조치 결과 또는 조치 방안을</u> 연락을 한 자에게 알리는 것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0조의4 제1항 제2호가.목;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참조]
		[신 설]	시행령 안
		⑧ 특허청장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매출액, 이용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08조의6 제8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온라인서비스로 인한 매출액 2. 직전 사업연도에 온라

			인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의 판매가액 합계액 3.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 4.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
	현행 법안	개정 제안	
제 237 조 제1항	과태료	[제5호 추가] 제108조의6 제4항을 위반하여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응답하지 아니한 자	
제 108 조 의6 제6 항	⑥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국내 대리인이 제1항 각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효과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미친다.	
제 237 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및 국내대리인에게</u>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237 조 제7항	⑦ 특허청장은 제2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삭제] ※ 해당 규정 위반 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필요적으로 과태료 부과, 국내대리인에게는 임의적	

	로 인한 과태료를 국내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으로 과태료 부과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개정안 제 237조 제1항과 중복됨
--	-----------------------------	--

제6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이용자(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상표권자 등에게 소위 침해자인 서비스이용자(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와 그 범위와 관련하여 국내, 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외국의 예

1. DSA (제10조)

- (1)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국내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유럽연합 준거법 또는 유럽연합 법률에 따른 국내 준거법에 근거하여 1명 이상의 특정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는 경우, 해당 명령을 내린 기관 또는 명령에 명시된 그 밖의 기관에 지체없이 명령의 수령, 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와 구체적 조치시기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회원국은 제(1)항의 명령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적어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해당 명령이 아래의 요건을 포함할 것
 - (i) 명령에 대한 유럽연합 법률 또는 국내법상 근거의 명시
 - (ii) 해당 명령을 내린 기관을 식별하는 정보
 - (iii) 하나 이상의 계정 이름 또는 고유 식별자 등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제공 요구 대상인 특정서비스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
 - (iv) 범죄의 예방, 수사, 탐지 및 기소와 관련된 사유로 이유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제공 요구의 목적 및 중개서비스 이용자가 관련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제공 요구가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이유서
 - (v)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문제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제도에 관한 정보
 - (vi) 해당하는 경우, 명령의 효력에 관한 정보를 통지해야 하는 관할당국에 관한 정보

(b)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이미 수집하여 통제 하에 있는 정보의 제공만을 요구하는 명령일 것

(c) 명령은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제11조(3)에 따라 지정한 언어 중 하나, 또는 명령을 내린 기관과 해당 제공자가 합의한 회원국의 그 밖의 공식 언어로 전송되고, 제11조에 따라 해당 제공자가 지정한 전자 연락 창구로 발송되며,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언어 또는 양자가 합의한 그 밖의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령은 적어도 이 항 제(a)호와 제(b)호에서 명시한 요소에 관하여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언어 또는 양자가 합의한 그밖의 언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었다면 명령을 내린 기관의 언어로 전송할 수 있을 것

(3) 해당 명령을 내린 기관 또는 명령에 명시된 당국은 중개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 조정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4) 관련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 조정자는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명령의 사본을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시스템을 통해 그 밖에 모든 디지털서비스 조정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5)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나 명령을 내린 기관이 명령에서 별도로 명시한 시기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하는 시기에 명령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자에게 수령한 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는 제(2)항에 따른 이유서와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하여야 한다.

(6) 이 조에 규정된 조건과 요건은 국내의 민사 및 형사소송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사건: (6)은 국내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가처분 등을 통해 정보제공에 관한 조치를 임시제한하는 등의 가능성이 막혀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상표법안 제108조의3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서비스의 재개를 명하는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독일(Digitale-Dienste-Gesetz:제33조 제6항 제2호, 제5항 제1호)

DSA 제10조 (1)에서 정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중개서비스제공자는 10만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중국 전자상무법(2019)

중국 전자상무법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판매자)에 대한 시장감독 및 과세업무를 위

해 아예 온라인플랫폼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유하는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행정당국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제28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세금징수관리법과 행정법규에 따라 플랫폼 내 운영자의 신원 정보와 세금 관련 정보를 세무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법 제10조에 따라 시장 거래의 처리 주체로 등록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세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80조(벌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유관 주관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본 법 제28조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 세무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미 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소비자를 위한 정보공개법²⁸⁾

미국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 플랫폼 이용자(판매자)의 신상 정보를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웹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3. 6. 27. 「Integrity, Notification, and Fairness in Online Retail Marketplaces for Consumers Act (INFORM Consumers Act: 15 USC 45f)」 규정이 도입되었고, 이후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이 법명이 바뀌었다(개정내용은 2024. 11. 10.부터 시행).

이 법의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여금 판매자에 대한 정확하고 업데이트 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도록 강제하여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권리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 법 적용 대상자

(1) 온라인 마켓플레이스[(f)(4)]

소비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① 판매자가 미국에서 제품의 판매, 결제, 보관, 배송을 허용하거나 촉진하거나 활성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28) 15 USC 45f: Collection, verification,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online marketplaces to inform consumers, 2024.

② 하나 이상의 판매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고, ③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 등을 맺는 주체를 말한다.

(2) 대량 판매자[(f)(3)]

과거 24개월 사이에 연속 12개월 동안 신제품에 대해 200건 이상의 거래실적이 있고 총 거래액이 5,000달러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대량판매자에 대한 정보 관련 의무[(a)]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대량 판매자가 제품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량 판매자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검증·보관·업데이트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의 수집[(a)(1)(A)]

판매자가 대량 판매자 자격을 취득한 후 10일 이내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판매자의 은행정보, 연락처, 세금 ID, 이메일과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2) 정보의 업데이트와 인증[(a)(1)(B), (C)]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최소 1년에 한 번 대량 판매자와 연락하여 전자적 인증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해당 판매자가 연락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필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공개할 때까지 해당 판매자의 판매 활동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3) 정보의 검증[(a)(2)(A), (B)]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위와 같이 대량 판매자 정보가 수집되거나 업데이트 되면 10일 이내에 해당 판매자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대량 판매자가 유효한 정부 발행 세무 문서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문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해당 문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검증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정보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제한[(a)(3)]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이 법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이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5) 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a)(4)]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이 법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무단 사용, 공개, 접근, 파괴 또는 수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의 특성과 사용목적에 적합한 행정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 장치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구현하고 유지해야 한다.

(6) 정보의 공개[(b)]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이 수집·보관하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① 공개 대상자[(b)(1)(A)]: 연간 판매량이 20,000달러 이상인 대량 판매자

② 공개의 방법: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법

i) 제품 목록 페이지(하이퍼링크를 통한 것을 포함) 또는 ii) 구매가 완료된 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주문 확인 메시지 또는 기타 문서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비자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말한다.

③ 공개 대상 정보[(b)(1)(B)]: 대량 판매자의 이름, 주소, 유효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대량 판매자가 스스로 제품을 판매하는 대신 제3의 판매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해당 판매자의 이름, 주소, 유효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7) 공개의 예외[(b)(2)(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대량 판매자 정보 공개의무는 일부 면제될 수 있다. 즉, 해당 판매자가 i) 영업장 주소는 따로 없이, 실제 거주지 주소만 보유하고 있다고 소명함에 따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판매자의 소재 국가나 주(洲)만을 명시하고(필자 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제 거주지 주소를 노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나머지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ii) 판매자가 반품용 주소를 보유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이를 영업장 주소 대신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는 경우, iii) 판매자가 개인 전화번호 외에, 영업용 전화번호가 없다고 소명함에 따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판매자와 이메일 등으로만 접촉하도록(필자 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안내하는 경우

(8) 공개 예외에 대한 제한[(b)(2)(B)]

다만, 이 경우 판매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주장·소명하였거나, 소비자가 해당 접촉수단으로 판매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10일 이내에 답변할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판매자가 [(b)(1)(B)]에 따라 요구되는 신원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해당 판매자의 향후 판매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9) 신고 수단[(b)(3)]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소비자로 하여금 의심스러운 마켓플레이스 활동에 대해 전자 및 전화로 신고하는 수단을 대량 판매업체의 제품 목록에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10) 정보공개에 강제

대량 판매자가 이 법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공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 통지를 제공하고 해당 통지가 발행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판매자가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해당 판매자의 향후 판매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다. 위반의 효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해당 의무 위반은 연방거래위원회법[15 U.S.C. 57a(a)(1)(B)] 위반으로 간주하며, 위반 건당 \$50,120의 민사상 과징금이 부과된다.

5. 일본(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의 발신자 정보개시청구)

가. 권리주장자의 개시청구(제5조)

권리주장자는 i) 침해정보의 유통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명백하고, ii) 피의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필요 등 발신자의 정보를 공개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는 발신자 정보 중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타 발신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총무성 령이 지정한 사항들에 대해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5조).

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제6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제5조에 의한 개시 청구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신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정보 개시청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그로 인해 권리 주장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스스로가 발신자인 경우는 제외). 이는, 정보개시 요건이 명백히 충족되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보개시 거절이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닌 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개시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권리 주장자가 정보개시를 소구(訴求)할 것을 전제로 한 제도설계이다.

다. 발신자 정보 공개 명령(제8조)

법원은, 특정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되었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해당 의무 제공자에게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근거로 한 발신자 정보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나아가, 프로바이더 법은 유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상당수가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기업인 현실을 감안하여 정보개시청구 소송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제9조 이하).

II. 국내의 입법례 (전자상거래법)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해 통신판매업자의 상품(서비스 포함)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상공간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알선하는 자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규정하여 규율하는 바, 이는 개정 상표법안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하는 자”)과 사실상 중첩된다. 따라서 이미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법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은 마땅히 개정 상표법에도 참고됨이 상당하고, 나아가 가급적 양 법 사이에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규범 충돌을 방지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막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은 아래와 같이 복수의 조항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통신판매

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조 문		내 용	비 고
온 라 인 서 비 스 제 공 자 에 의 한 판 매 자 신 원 정 보 의 제 공	제9조 제3항 (호스 팅서 비스 제공 자)	③ <u>사업자와 소비자 사이</u> <u>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u> <u>호스팅서비스를</u>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 청에 따라 <u>사업자의 신원</u> <u>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자료를</u> 제공함으로써 그 분쟁의 해결에 협 조하여야 한다. 1.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 자(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3.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 4. 수사기관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1) 개념 ▪ 사업자: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법 제2조 제6호) → 상표법 개정안의 서비스 이용자(판매자)의 개념과 실질적으로 동일함 ▪ 호스팅 서비스: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법 제9조 제2항) → 상표법 개정안의 ‘온라인 서비스’ 범주에 포함됨(…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하는 것) 2) 정보제공 ①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두어야 할 의무를 짐(제9조 제2항) ② <u>신원정보의 내용(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u>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2.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를 포함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

		i) 분쟁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 ii) 공정위, iii)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iv) 수사기관, v)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제9조의2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하여 얻은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공정거래위원회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개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전자게시판: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9호)를 제공하는 자 → 상표법 개정안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이 범주에 포함됨(…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하는 자) 2) 정보제공 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두어야 할 의무를 짐(제9조의2 제2항) ② <u>신원정보의 내용(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u>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③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i)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법 제33조, 시행령 제35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㉔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ii) 공정거래위원회 iii)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및 공개의무	제 20조 (통신 판매 중개 자의 의무 와 책임)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중개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함
판매자의 신원정보 에 대한 사전	제 12조 (통신 판매 업자 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u>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u>전화번호</u> 2. <u>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u>	1) 통신판매업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진·사전 신고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스스로 <u>자신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호스트서버의 소재지</u>를 당국에 신고해야 함. - 당국은 해당 사항과, 필요한 부수적 신고서류의 진위를 확인

신 고, 공 개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15조: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9조(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여 신고증을 교부해야 함(시행령 제13조) 2) 공정거래위원장에 의한 통신판매자 신원정보 공개 -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이 신고된 통신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공중에 공개할 수 있음 - 시행령 제19조는 공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의 사유와 구체적 방법은 언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은 공정거래위원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됨
	제 13조 (신원 및 거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	통신판매업자는 거래관계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래 조 건에 대한 정 보 의 제공)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이하 생략)	신원정보를 거래관련 표시나 광고 시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함 ▪ 특히, 거래를 위한 광고에 이를 포함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게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사전공개하는 것과 차이가 없음
위 법 사 유 발 생 시 의 정 보 공 개	제 28 조 (위법 행 위 등에 대 한 정 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사업자나 소비자보호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법 제28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사실 등을 소비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III. 정리와 시사점

1. 판매자 신원정보에 대한 요청 가능성

앞서 본 각국의 상황이나 국내의 전자상거래법 등 입법 선례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자의 신원정보(이름, 상호,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에 대해 폭넓은 접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미국 :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 플랫폼 이용자

(판매자)의 신상 정보를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웹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강제 [Inform Consumers Act, 2024(15 USC 45 f)] (b)

- 일본: 온라인에서 타인의 행위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자는 피의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필요 등 발신자의 정보를 공개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특정 전기통신역 무제공자)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는 발신자 정보 중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타 발신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총무성령이 지정한 사항들에 대해 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5조).
- 중국 전자상무법(제28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플랫폼 내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강제함
- DSA(제10조):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계정 이름 또는 고유 식별자 등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강제

이런 각국의 태도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 등의 과정에서 판매자와 상대방(소비자 / 상표권자 등)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의 첫 관문으로서 판매자 신원정보의 투명성 및 그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자상거래법은 심지어 ① 통신판매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의 전제로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시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제12조), ② 온라인서비스 제공자(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등)로 하여금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두었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당사자인 소비자나, 당국에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실정(제9조, 제9조의2, 제20조)이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동향이나 국내 유사 입법과의 최소한의 정합성을 감안하면, 상표법 개정안 역시 마땅히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한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 권리자가 구제절차 시작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판매자(피의 침해자)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법, 한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2. 접근대상이 되는 정보

가. 신상정보로 한정

- 국제적 동향이나 국내 유사입법의 선례를 감안하면, 접근 대상이 되는 판매자의 정보는 일단 신상정보(이름과 상호,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및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정도)로 한정함이 상당해 보인다.
- 이는 상표권 침해 주장 및 권리구제 수단의 착수를 위해 i) 피의 침해자가 누구이고, 어디 있는 서버를 통해 피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ii)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접촉하거나 고소나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 그 밖에 피의 침해품의 판매수량이나 거래상황 등 신상정보를 넘는 정보들은 규정의 취지나 남용의 우려 등을 감안하면 정보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침해소송 등에서 자료제출명령이나 기타 소송절차에서 보장된 제도들을 통해 접근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나. 규정의 방식

- 규정의 방식은 법문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판매자의 신상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구체적 대상을 대통령령에 탄력적으로 위임함이 상당하다.

IV. 입법모델의 제안

현행 법안	시행령 제안	해 설
제108조의4(정보의 제공)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① 법 제108조의4 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에게 요청할 수 있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1) 시행령 제1항 ① 상표권자 등 개인에게 이용자 개인의 주민번호까지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고, 소 제기나 형사고소를 위한 당사자의 특정을 위해서도 대체로 성명과 생년월일 정도를 아는 것으로 족함. 대응규정인 전자상거래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역시 개인(소비자)이 소제기를 위해 사업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전부가 아닌 생

게 그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서비스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중략) ⑦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의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명 및 생년월일)를 포함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3.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인름 및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였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위 자료의 제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년월일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② 제공되는 주소와 전화번호는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상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하고, 개인의 거주주소와 전화번호는 대상에서 제외됨 대응규정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제2호 역시 동일한 취지이고, 미국의 Inform Consumer Act(2024) [(b)(2)(A)]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대량 판매자 정보 공개의무는 일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판매자가 i) 영업장 주소는 따로 없이, 실제 거주지 주소만 보유하고 있다고 소명함에 따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판매자의 소재 국가나 주(洲)만을 명시하고(필자 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제 거주지 주소를 노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나머지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ii) 판매자가 반품용 주소를 보유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이를 영업장 주소 대신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는 경우, iii) 판매자가 개인 전화번호 외에, 영업용 전화번호가 없다고 소명함에 따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판매자와 이메일 등으로만 접촉하도록(필자 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안내하는 경우” ③ 이메일주소나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 전자적 거래의 과정에서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대표적 신상정보로서, 그 제공을 강제하는 것은 국내외 비교법적으로도
---	---	---

		보편적 사항이고, 특별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으므로 포함시킴이 당연해 보임 ④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및 서비스 제공지는 상표권 침해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침해의 ‘행위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침해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필요시 서비스 금지가처분이나 본안의 소송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임(상표법 개정안 제108조의5(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규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사전에 당국에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2) 시행령 제2항 ▪ 법안 제108조의7 제7항 관련임: 법 제108조의4 제1항이 ‘<u>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u>’ 라고 정보제공 요구의 사유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그런 절차를 개시하였음을 증빙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소제기나 고소가 아닌 다른 의도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어려움. ▪ 일단 관리자가 아직 서비스이용자(피의 침해자)의 구체적 신원정보를 모르는
--	--	---

		상태에서도 상대방을 ‘성명불상자’ 라고 지칭하면서 피의 침해사실의 일시, 장소, 규모 등 사실을 특정하여 제소나 고소의 접수를 하고 이후 신상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위와 같은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	---

-끝-

상표법, 부정법상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조치의무 등 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일: 2025년 2월

발행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www.kipo.go.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